

## 기획위원회 규정

제1조(목적) 본 규정은 사단법인 한국.조명전기설비학회(이하 “본 학회”라 한다)의 각종기획 및 장기발전방향에 관하여 업무를 담당하는 기획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업무) 본 위원회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.

1. 각종기획 및 정책 수립
2. 장·단기 발전방향 수립
3. 회원사 및 협력사 상호협력 및 협찬사항
4. 총무, 재무학회 재정 자립정책
5. 회원 모집 및 관리정책

제3조(구성) 본 위원회는 위원장 1명, 부위원장 및 위원 약간 명으로 구성하며, 위원장은 기획담당 부회장, 부위원장은 총무, 재무이사 중에서 보하고,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으로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 회장이 위촉한다.

제4조(위원장, 부위원장 및 위원) 위원장은 본 위원회의 제반사항을 총괄하며 본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. 위원장 유고시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.

제5조(회의) 본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.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 의 참석으로 개최하고 의안은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되며,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가부를 결정한다.

제6조(간사) 위원회의 회무를 관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다. 간사는 회장이 위촉한다.

## 부 칙

1. 이 규정은 2010년 1월 13일부터 제정하여 시행한다.